

# ISO/TC 전문위원회 및/또는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: 2010년 8월 26일

개정 : 2024년 2월 23일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.)의 소음진동관련 분야 국제 표준화 사업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국내간사기관으로써 역할 및 국내 산업 표준 (KS) 개발 업무를 위해 학회 시행세칙 제 26조에 따라 전문위원회 및/또는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와 활동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고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조직)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전문위원회 및/또는 기술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 필요에 따라 추가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① ISO/TC43
  - ② ISO/TC108
- 제 3 조 (직무) 각 위원회는 국제 표준화 및 국내 산업 표준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수행하며, 그 업무 진행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 전에 학회 이사회에 보고 한다. ① 최신의 국제 표준기술 동향을 파악하고, 국내 표준의 국제 표준화(부합화)를 위해 노력한다. ② 학회를 대표하여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국제 표준화 신규 규격을 제안한다. ③ 학회를 대표하여 국제 표준화 건에 대한 문서 검토와 투표 및 코멘트를 제시하며, 표준화 문서 검토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 ④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표준화 활동시에는 다음의 표준 개발원칙을 준수한다.
- (1) 표준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 개발되어야 한다.
  - (2)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.
  - (3)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하여야 한다.
  - (4)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 한다.
  - (5) 다른 표준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, 유사관련 표준과의 용어,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한다.
  - (6)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.
  - (7)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,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 4 조 (권리 및 임무)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학회의 재정적, 행정적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. ② 각 위원회는 표준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음의 세부 사항을 추진한다.
- (1)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
  - (2) 표준 작성의 형식,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
  - (3)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
  - (4)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, 의견제시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
  - (5)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
  - (7)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익,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

(8)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5 조 (구성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간사 약간 명과 전문위원을 분야별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 ②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이 위촉한다. ③ 각 위원회 간사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 ④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특정 이해 당사자에 치우치지 않도록 협의하에 분야별로 전문위원 약간명을 구성한다. ⑤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의 활동실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하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 ⑥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⑦ 각 위원회 간사는 회의 개최 계획의 수립 및 회의소집에 필요한 절차 수행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 ⑧ 각 위원회는 표준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적합한 전공 및 경력사항 등 전문성을 확보한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학회 본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.

제 6 조 (임기) 각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) 각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제 8 조 (의결) 각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 할 수 있다.

제 9 조 (기타)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산업표준 개발에 관한 기타 업무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2024년 2월 23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